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01
----------	-------

발의연월일 : 2025. 8. 27.

발 의 자 : 양부남 · 강준현 · 김문수
김현정 · 박균택 · 박수현
박정현 · 이강일 · 이광희
정준호 · 조계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선거 개표소를 관할구역에 있는 위탁단체의 시설 등에만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당 관할구역에 적정한 시설이 없는 경우에 합리적 조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위탁선거는 현행법규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경비를 납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한 경비를 집행한 후 잔액을 정산하여 위탁단체에 반환하고 있는데, 위탁선거의 특성상 선거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는 세입세출예산 외의 운영은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관할구역 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구역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6조)하고,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78조제7항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경우 문자뿐만 아니라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2호)
- 나. 개표참관인의 신고기한을 투표참관인의 경우와 같이 선거일 전 2일로 함(안 제45조제1항).
- 다. 관할구역 안에 적정한 시설 등이 없는 경우 인접한 다른 구역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 라. 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제7항 신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 중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메시지”를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전일”을 “전 2일”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관할구역”을 “관할구역(해당 구역 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8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1항에 따라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의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u> <u>· 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u> <u>지를 전송하는 방법</u>	2. <u>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u> <u>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u> ----- ----- ---
제45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후 보자는 해당 위탁단체의 조합원 또는 회원 중에서 투표소마다 2 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 여 선거일 전 2일까지, 개표소 마다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u>전일</u> 까지 관할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 표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 다.	제45조(투표·개표의 참관) ① - ----- ----- ----- ----- ----- ----- <u>전 2일</u> ----- ----- ---. ----- ----- ---.

② ~ ⑥ (생 략) 제46조(개표소의 설치 등) ① 관 할위원회는 해당 <u>관할구역</u>에 있 는 위탁단체의 시설 등에 개표 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섬 또는 산간오지 등의 지역에 투 표소를 설치한 경우로서 투표함 을 개표소로 이송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 의 의결로 해당 투표소에 개표 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제78조(선거관리경비) ① ~ ⑥ (생 략) <u><신 설></u> ⑦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6조(개표소의 설치 등) ① -- ----- <u>관할구역(해당 구역 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구역을 포 함한다)</u>----- -----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8조(선거관리경비)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라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국가재정 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세 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 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	--